

간호학과 인사 및 교원업적평가 내규

제정 : 2013.08.01

개정 : 2019.07.10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 인사규정에 의거 하여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 라 한다) 교원의 인사를 예비 심의하고 소속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조(운영 조직) ① 학과의 겸임교수, 초빙교수, 강사 등의 인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학과 교수회에서 예비 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교원업적평가는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학과장이 평가한다.

제3조(인사 운영) 학과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사 운영을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학과 신규채용 교수의 자격 심의
2. 학과 교수의 연구업적, 산학협동 기여도 및 학내외 봉사활동의 정기적 평가
3. 외래교수 (겸임교수 및 강사)의 적합성 심사

제4조(소집) 학과장은 본 규정의 목적에 따라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 교수회를 소집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5조(교원 신규채용 심사) ① 교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과는 겸임교수, 초빙교수, 강사 등의 대상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채용 후보자를 본 대학 교무처에 추천 통보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③ 3단계 면접심사는 대학의 인사규정에 따르며, 학과장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④ 학과 특성에 따른 심사기준의 세부항목은 학과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23.10.16.]

제6조(교원업적평가) ① 학과에서는 교원 실적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학 「교원업적

평가규정」에 따라 실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과장은 교수 업적 평가 시 학과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정도, 연구 및 교육, 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의 심사기준과 업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인사 및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학과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